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91
----------	-------

발의연월일 : 2025. 11. 24.

발 의 자 : 장경태 · 강준현 · 민병덕
문정복 · 김영환 · 이수진
김문수 · 김승원 · 윤호중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도의회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 홀수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도회의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와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합하여 산정된 시·도회의의원정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홀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정수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u> <u>라 시·도의회 지역구시·도</u> <u>의원정수와 비례대표시·도의</u> <u>의원정수를 합하여 산정된 시·</u> <u>도의회의원정수가 짝수인 경우</u> <u>에는 비례대표시·도의의원정수</u> <u>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u> <u>항에 따라 산정된 정수에 1명</u> <u>을 더한 수로 한다.</u>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 원정수) ① 시·도별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 원정수) ① ----- ----- ----- ----- ----- ----- ----- ----- ----- ----- ----- -----

한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자치구·시·군 의회의 의원정수는 홀수로 한 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